

해양수산동향

Vol. 1198

2005. 12. 7

부연구위원 정갑용
 TEL 2105-2745
 E-mail kyjeung@kmi.re.kr

일·중 해저가스전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01 해양에는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직속 해양위원회에서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통합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며, 일본과 중국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으로 해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02 최근, 중국은 일본과의 가상해양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춘샤오(春曉) 등 해저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군함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일본도 해저가스전 개발에서 해상자위대가 경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는 등 분쟁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가스전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가열될 것으로 보임

03 이와 같은 일본과 중국의 분쟁원인은 양국이 주장하는 중국해 수역에 대한 해양경계 획정기준이 다른 것에 기인하는데, 일본은 중간선원칙을,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에서 일본과 대륙붕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을 주장하고 있음

04 국제규범과 국제판례로 볼 때,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가 동중국해 해양경계 획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도서의 존재, 해안선의 길이,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05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자원 조사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일본이나 중국 등 관계국과의 경계 획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법 논리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정리, 국제동향의 분석, 정리 등이 필요함. 또한 해양자원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임

해양에너지자원의 중요성

해양은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여러 가지 광물자원을 부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생물공학, 해양레저산업 등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권리를 주장하여 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1945년 미국의 트루먼 선언 이후 해양자원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해양관할권주장과 탐사 및 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에서 처음으로 일반조약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착되었다.

해양광물자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티타늄, 크롬, 주석 등을 함유한 중금속광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하에 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역관리 및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통합 모델을 도출하여 이를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를 보면, 일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으로 석유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업체간 경쟁력 확보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도 2003년 3월에 정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개발계획위원회를 통합하여 국가개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장기적 차원의 국가에너지 전략 수립, 석유가스 프로젝트 승인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분쟁현황

일본과 중국과의 해저가스전 분쟁은 중국측이 지난 2004년 9월경 동중국해의 양국 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채굴하기 위한 플랫폼을 건설한 데 이어 중국 쪽으로 9km쯤 들어간 곳에 두 번째 플랫폼을 건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이 그러한 개발활동이 자국의 해저자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의한 데서 시작되었다.

최근에 중국은 일본과의 가상해양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춘샤오(春曉) 가스전 채굴을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였고 현재 중국 쪽으로 9km 들어간 북위 28도 31분, 동경 125도 지점에 두 번째 플랫폼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역에는 텐와이텐(天外天), 춘샤오(春曉), 단차오(斷橋), 잔취(殘雪) 등 4개의 가스전이 군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동중국해의 대륙붕 가스전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중 양국 중간선에 있는 춘샤오(春曉) 가스전 부근에 중국이 군함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일본도 가스전 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작업이 영향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상자위대가 경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찍이, 중국은 2002년 10월부터 동중국해의 “일본·중국 중간선”에서 중국 쪽으로 3마일(약 4.8 km) 떨어진 해역에서 해저석유자원의 굴착을 하고 있던 석유굴착장치 “勘深 3호”가 석유가스를 찾는 데 성공하자, 이 석유가스전을 “春曉 3호”라 명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 EEZ 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춘샤오(春曉) 가스전 이외에도天外天(天外天), 斷橋(斷橋), 殘雪(殘雪) 등 4개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이 지역에서 물리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과 중국 간에 해저가스전 개발에 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의 주장

인접 대륙붕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관할권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해양법상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중간선원칙을, 중국은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대륙붕이 연안국 영해로 향하는 자연적인 연장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에서 육지영역에 대한 주권에 기초하여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린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으로부터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제정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동중국해의 魚台列嶼나 남중국해의 東沙群島, 西沙群島, 中沙群島, 南沙群島가 중국령임을 명기한 규정이 있지만 그 영해기준선은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자신들의 부존자원 보호를 위하여, 중국과 일본에 면해 있는 동중국해 수역의 폭이 400해리에 못 미쳐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EEZ 설정이 어려우므로 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고 주장한다.

유엔해양법 제74조(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어진다.」

유엔해양법 제83조(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륙붕경계와 EEZ 경계선과의 관계, 오키나와 해구 존재의 경계획정 반영 여부 및 3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서 반드시 논의되는 Tri-junction의 도출 문제 등이다.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육지의 자연연장이론에 근거하여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시사점

동중국해에서 필연적으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대두하게 되면 한국도 중국, 일본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도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육지의 지역적 연장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되는 반면에 일본의 자연적 연장은 단절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키나와 해구가 동중국해 해저지형의 근본적인 단절을 구성할 경우에는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관련요소는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동중국해의 대륙붕과 EEZ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전략적이며 심도 있는 체계적 연구를 해야 한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중국해 문제의 해결방향에 따라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중국의 강력한 항의로써 미뤄졌던 서해안 광구의 물리탐사 작업을 다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진척 있는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예상된다.

1970년대 군산 앞바다에서 미국 석유회사와 광구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군산 앞바다인 서해 대륙붕에서는 중국과의 대륙붕 경계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서해 대륙붕 석유탐사와 관련하여 중국측과

수차례 마찰이 발생한 바 있으며 서해에서의 탐사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해결 방향에 따라 이상의 사업추진 여부 및 진행의 향방에 대하여 다시금 논의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우리의 정책방향

무엇보다도, 해양과학탐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자원 조사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탐사 및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인접국과의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적 탐사자료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륙붕 조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980년대 석유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한 7광구 지질조사 일부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9,800km에 걸친 조사가 전부이다. 반면에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인접 대륙붕에 대한 해저지질조사를 시작하여 가장 많은 조사자료(약 233,000km)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동중국해에 대한 해저지질조사(35,000km)를 수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해양영토의 확보 및 주변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에 대비하여 관련자료 수집, 국제동향의 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제해양법, 해양지리 및 지질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대륙붕위원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동향의 분석 및 국제법상의 문제점 연구 등을 통하여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타국과의 분쟁이나 대륙붕 외측 한계자료의 제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개발에 관한 권리를 선언하고 7개의 해저광구를 설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당시 1970년의 해저광물자원법에 의거한 7개 광구의 설치와 이에 따른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명문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EEZ와 대륙붕을 함께 규정한 단일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륙붕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 개정하는 등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1> 에너지원별 세계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천만TOE, %

구분	1990년	1999년	2010년	2020년
석유	339.9(39.1)	383.5(39.9)	492.4(39.7)	609.3(39.5)
천연가스	187.7(21.5)	219.0(22.8)	311.0(25.1)	424.9(27.6)
석탄	226.8(26.0)	213.7(22.2)	263.8(21.3)	308.2(20.0)
원자력	50.4(5.8)	63.8(6.6)	69.3(5.6)	70.6(4.6)
수력 및 기타	66.8(7.7)	83.4(8.7)	104.8(8.4)	127.8(8.3)
합계	872.4(100)	962.4(100)	1241.4(100)	1541.0(100)

자료: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2)*, IEA

<그림-1> 중·일간 해저자원 분쟁

